

제3장 무역구제

제1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1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거나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절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 관세율, 또는
- 2) 제2.5조(관세 철폐) 제2항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3.2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2항에 기술된 조사의 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철폐)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3.3조

잠정조치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3.2조 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그 당사국은 제3.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3.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3.2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3.4조

보상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해 상호 합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그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자국의 상품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 실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양해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4조제1항 가호 및 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각 상품에 대하여 경우에 맞게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절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6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당사국은, 어느 연도에 부속서 3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의 총 수입물량이 부속서 3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합치되게 그 상품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는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2011년 7월 1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부속서 3에 포함된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세는 부속서 3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정해진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제3.1조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또는

다.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른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5.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6.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은 제2.16조(상품무역 위원회)에 언급된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부속서 3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나. 그 조치가 부속서 2-가(관세 철폐)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의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맺은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 중이던 해당 상품의 모든 공급은 그러한 모든 추가적인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 물량은 차기 연도에서의 제1항의 발동 목적상 차기 연도 동안 해당 상품의 수입 물량으로 계산될 수 있다.

제3절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7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양 당사국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당사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잠정적 결과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해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절대적 양 또는 가액 기준으로 측정하여 당사국이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수입된 상품의 상위 5대 공급자 중 하나인 경우, 그 당사국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간주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 가. 제3.1조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 나.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5.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4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3.8조

일반규정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 협정”이라 한다)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제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 협정 제6조제5항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조제4항을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최대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충분한 방어권을 고려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에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 영어의 사용이 양 당사국에 의해 수용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대한민국이 한국어 서면으로 된 명확화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목적상, 제출된 문서의 의미가 대한민국의 조사 당국에 의해 합리적으로 명확하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목적상, 그 요청이 합리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엄격하게 한정되는 경우

4. 조사행위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 동안 그들의 견해를 표시하기 위한 청문 기회가 부여된다.

제3.9조

통보

1.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15일전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는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제3.10조
공공이익의 고려

양 당사국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11조
재심에 의한 종료 이후 조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면서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가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12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

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3.13조
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 1. 반덤핑 협정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대상이 된 조치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덤핑마진이 반덤핑 협정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종결된다.
- 2. 반덤핑 협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별 마진을 결정할 때, 대표적 수출판매에 근거하여 덤핑마진이 반덤핑 협정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면, 어떠한 관세도 수출 당사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3.14조
최소부과 원칙

당사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세액은 덤핑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 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그 마진 미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3.15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5절
제도 규정

제3.16조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1. 제15.3조(작업반)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은 무역구제 협력을 위한 대화의 포럼이다.

2. 작업반은 다음을 그 기능으로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나.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다.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라.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

마. 다음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

1)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2)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과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서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력하는 것

3. 작업반은 통상 연례적으로 회합하며, 필요 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